- 【적용대상】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- 【적용시기】 '23.8.31.~별도 개정 시까지

※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

# -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-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(제10-1판)

2023. 8. 29.



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

# 주요 개정내용

주요내용	제 10판	제 10-1판
코로나19 감염병 등급	「감염병예방법」제2조(정의)에서 '제2급감염병'에 해당	「감염병예방법」제2조(정의)에서 '제4급감염병'에 해당
소독·환기	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·환기 ('코로나19 대응 집단·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', '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가수칙에 따름)	삭제
방역인력	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·운영	삭제
기숙사	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·소독 등 철저,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	삭제

■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**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** 

## 대응 방향

○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등급을 조정('2급'→'4급')하고 방역
 체계를 완화('23.8.31.)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관련 내용 수정 반영 적용

# 학교 일상관리

#### 1. 학교 환경관리

- (방역물품)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·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 비치 \*「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」제시 수준 비축·유지
- (일시적 관찰실) 유중상자 대기·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

  ※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유지(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)
- (급식실) 급식시설·기구 청소·소독,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,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,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\*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\* 급식종사자의 확진자 권고 격리 기간 준수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

#### 2. 개인 방역관리

- (방역수칙)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(방대본 발표) 실천 및 교육·홍보 지속
  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,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,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홍보 등 지속 실시
    - ※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교 내 정수기(음용)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
- (마스크 착용) 원칙적으로 미착용,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('참고' 별첨)
  - ※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'23.1.30.(월)부터 해제(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)
  - ※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
#### 상황 발생 시 관리

#### ○ 유증상자 발생시

- (가정)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\* 또는 진료
  - \* 자가검사(→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), 의료기관 등 방문
- (학교)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·검사 안내
  - ※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(권장)

#### ○ 확진자 발생시

- (학생·교직원)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학생·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
  - ※ (근거)「학교보건법」제8조(등교중지), 방역당국의 '코로나19 대응 지침'
  - ※ (방역당국 지침)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

#### 참 고

##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(학교 적용 기준)

○ 방역지침에 따라,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('23.1.30.~)되어 있으나, **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** 

방역당국 기준	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(학교학원 적용)
① 코로나19 <b>확진자</b> 이거나, 코로나19 <b>확진자와</b>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	좌동
② 코로나19 <u>의심 증상</u> *이 있거나, 코로나19 <u>의심</u> <u>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</u> 경우 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	좌동
③ 코로나19 <u>고위험군*</u> 이거나, 코로나19 <u>고위험군과 접촉하는</u> 경우 *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	좌동
④ 환기가 어려운 <b>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</b> <b>환경</b> 에 있는 경우	환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말집(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자가 어려운 경우)되어 있는 경우
⑤ <b>다수가 밀집</b> 한 상황에서 <b>함성·합창·대화</b> 등 <b>비말 생성 행위</b> 가 많은 경우	《사례별 권고 기준》  1. 교실,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2.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에서 응원 함성·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 서 교가·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4.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(학교장등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※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9판)」참고